서인천우체국 공고 제2021-23호

2021년 제4회 상시계약집배원(기간제)
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기·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

서인천우체국 시행 2021년도 제4회 상시계약집배원(기간제) **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기·면접시험 장소**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9월 16일

서인천우체국장

1. 서류전형 합격자

응시번호	비 고
서인천 101	김 ○ 덕
서인천 102	이 ○ 현
서인천 103	임 ○ 진
서인천 104	방 ○ 진
서인천 105	오 ○ 선
서인천 106	윤 ○ 셉

2. 실기 및 면접시험 일시 : 2021. 09. 24. (금) 14:30

3. 시험 대상자 유의사항

가. 대상자는 **응시표 및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1)**을 지참한 후, 대기 장소에 도착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대기 장소 : 4층 공노조사무실

※ 실기시험에 편한 복장착용(체육복, 운동화 등), 면접시험 응시복장 따로 준비

※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응시 불가

나. **실기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응시할 수 없음**을 알려드립니다.

최종합격자 발표는 '21. 09. 28. (화) 서인천우체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
다. 실기 및 면접시험 문의처 : 서인천우체국 지원과(☎ 032-590-9153)

4.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주의사항

가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, 의사(확진의심)환자*, 접촉자(격리대상자)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.

* 의사환자 :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
나.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응시자는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모든 응시자는 마스크 착용,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소독제로 손소독 및 체온 측정 후 입실이 가능합니다.

*** 시험실 입실 전 발열체크 후 고열(37.5℃ 이상), 기침,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경우, 별도의 대기실에서 대기 후 응시**

*** 응시자 중 확진자 발생 시 시험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**

*** 예방 수칙을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.**

라.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, 발열 또는 기침,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면접시험 전일까지 연락(032-590-9153)을 주시기 바랍니다.

*** 모든 응시자는 '붙임1' 의 '문진표' 를 사전 출력·작성하여,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(미 제출 시 시험응시 불가)**

바. 면접대기 장소에서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응시자와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응시자 사전 문진표

□ **아래 내용을 읽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[○] 표시하시기 바랍니다**

1.9.10.~9.24. 기간 중 본인, 가족, 지인에 대한 해외방문 또는 접촉 이력 확인

1-1. 본인 또는 동거중인 가족이 해외방문 이력이 있다. 예 [ ] 아니오 [ ]

1-2.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친구 또는 지인을 만난 적이 있다. 예 [ ] 아니오 [ ]

2. 9.10.~9.24.기간 중 확진자 또는 격리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. 예 [ ] 아니오 [ ]

3. 9.24. 기준 아래의 증세가 있다. 예 [ ] 아니오 [ ]

'예'인 경우 해당항목 ✔ 체크

□ 발열(37.5℃) □ 기침(인후통) □ 근육통(몸살) □ 호흡곤란 □ 가래 □ 설사

4. 9.10.~9.24.기간 중 확진자가 다녀간 기관에 방문한 적이 있다. 예 [ ] 아니오 [ ]

* 1~2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'21.9.24.(금) 서인천우체국에서 실시하는 우정실무원 면접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

□ **위의 내용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**

응 시 번 호 :

응시자 성명 : (인)

*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닉·은폐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* 형법 제137조에 따라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